

수 신 : 전회원  
참 조 :  
제 목 : 채권채무 전자조회 안내

---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회계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조회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거래조회와 채권채무조회를 전자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채권채무 전자조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계감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회계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주)웹앤어카운팅([www.wna.co.kr](http://www.wna.co.kr))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채권채무조회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02-555-681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전자채권채무조회시스템 개요. 끝.

한국공인회계사회



#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채권채무조회시스템

## 1. 개요

외부감사의 필수절차중의 하나인 채권채무조회업무를, 우편을 통해 수행하지 않고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수행하여, 업무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 솔루션입니다.

## 2. 현행 방법의 문제점

우편으로 수행되는 현행 채권채무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회신을 저조**: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조회서의 회신율이 상당히 저조함.

- ▶ 회신회사가 반드시 회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음.
- ▶ 외부감사인이 조회서의 도착여부, 회신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신회사가 회신해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음.
- ▶ 회신을 위해, 조회서에 확인여부를 기입하고, 날인하고 다시 재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회신회사의 회신행위를 저해함.

2) **발송 및 재발송의 어려움**: 조회서, 발송용 및 회신용 봉투를 일일이 작성하고 우편 발송함으로 인해, 발송을 위한 시간 및 인력이 많이 투입되며, 미회신 거래처에 대한 재발송작업도 역시 수작업으로 행해져야 함으로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많은 거래처에 조회를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3) **발송경로의 통제불가능**: 일단 발송한 후 상대거래처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체국 등이 개입됨으로서 외부감사인이 발송경로를 모니터링 할 수 없어 외부감사인의 신속한 조회서 회수노력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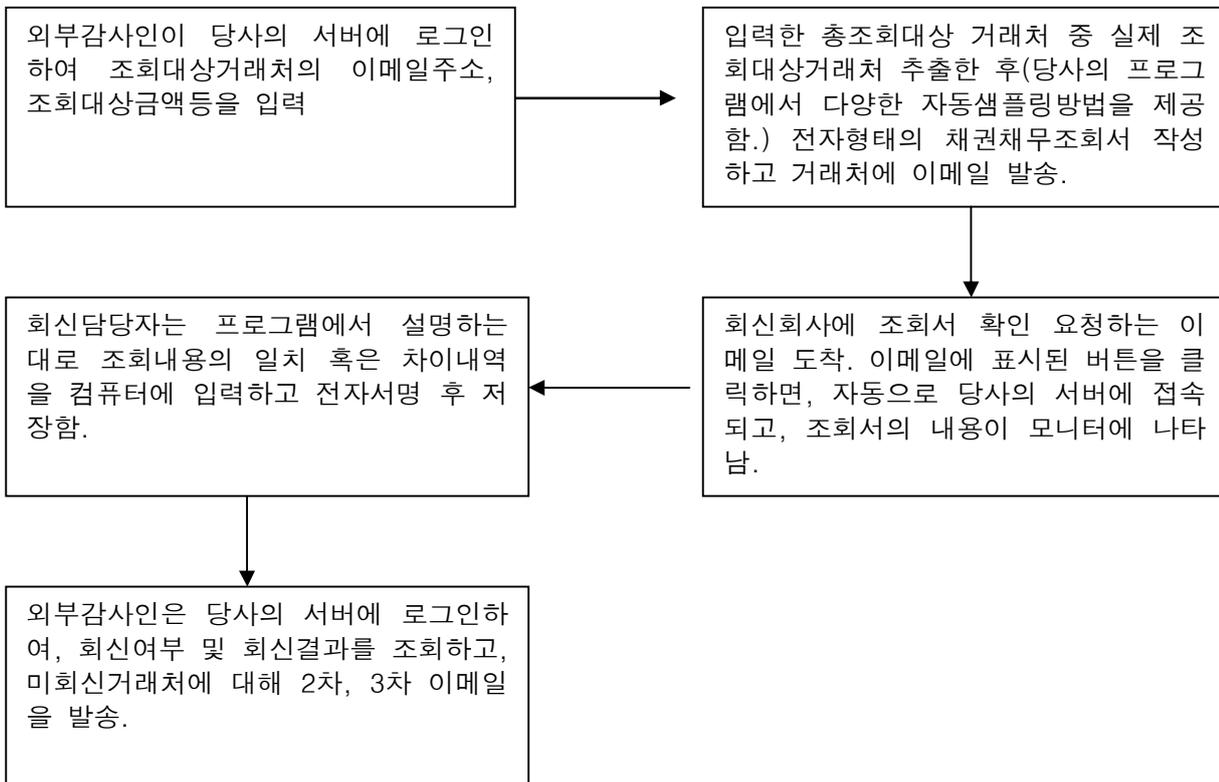
4) **회신행위의 법률적 효력**: 통상 조회서를 회신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회신하는 자가 임의로 날인하여 회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신된 조회서의 법률적 효력을 보증할 수 없음.

5) **주소불명거래처의 확인**: 거래처의 이사 혹은 폐업등으로 조회서가 반송되는 경우, 발송부터 반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재발송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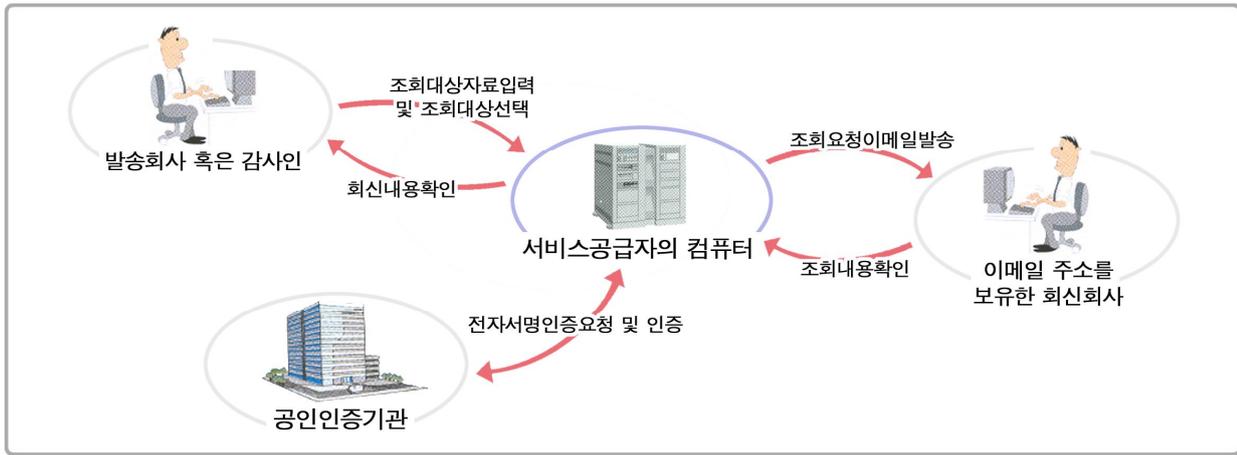
### 3. 전자채권채무조회시스템.

전자채권채무조회시스템은, 당사의 서버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에 외부감사인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조회와 관련된 명세서 입력 등의 필요한 작업을 하고 조회요청을 위한 이메일을 발송하면, 이메일을 받은 회신회사가 당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조회서 내용을 확인하고, 일치/불일치의 의사표현을 컴퓨터상에서 한 후 확인버튼을 누름으로써, 조회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채권채무조회서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되므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확실히 부여하기 위해, 회신회사가 회신을 할 때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전자서명을 하게 하고 있음이 특징입니다.

전자채권채무조회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는 전자채권채무조회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율 증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신율이 대폭 상승함.

- 우편물과는 달리 이메일을 받은 담당자는, 조회요청자가 이메일의 도착 및 회신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회신에 응할 확률이 높아짐. (실제로 모 상장법인의 경우 당사의 솔루션 사용결과 회신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음.)
- 컴퓨터상에서 간단히 회신할 수 있음.
- 외부감사인 혹은 피감사회사가 당사의 서버를 통해 회신회사의 회신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신을 독려하기가 용이함.

2) **발송 및 재발송의 용이함**: 조회서 발송을 위해 조회대상회사의 이메일 주소 및 조회내용을 당사의 서버에 입력하고 간단한 과정을 거쳐 발송이 이루어지며, 미회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메일을 재발송할 수 있음. 따라서, 조회대상거래처의 수에 거의 제한이 없음.

3) **발송경로의 통제가능성**: 조회서의 발송 및 회신행위가 모두 당사의 서버에서 행해짐으로써, 외부감사인은 언제든지 당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회신회사의 이메일 확인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

4) **회신행위의 법률적 효력**: 본 프로그램은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자서명은 하나의 개인 혹은 법인에 있어서 고유하며, 등록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신하는 담당자의 임의적 날인행위를 배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회신한 담당자 컴퓨터의 IP주소, 회신시간등 모든 자료가 당사의 컴퓨터에 기

록되기 때문에 조회서의 법률적 유효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음.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법인은 하나 이상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음)

- 5) **주소불명거래처의 확인과정:** 회신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변경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발송 이메일은 불과 몇 분 이내에 도착되므로, 이메일 재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우편조회와 전자조회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조회	전자조회
회수율	낮음. 그 이유는, - 회신이 번거로움. - 미회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음.	높음. 그 이유는, - 회신이 간단함. - 미회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큼.
발송 및 재발송의 용이성	우편발송에 필요한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많은 거래처에 조회를 보내기가 어려움.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발송이 가능함으로 발송거래처의 수에 거의 제한이 없음. 또한, 미회신여부의 파악이 용이하여 신속한 재발송이 가능함.
발송경로의 통제가능성	우체국등이 발송과정이 개입됨으로 발송과정의 통제에 한계가 있음.	당사의 서버를 통해 발송 및 회신여부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음.
회신행위의 법률적 효력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수령하지 않는 한, 회신담당자의 임의적 회신행위를 확인할 수 없음	개인 혹은 법인에 고유한 전자서명을 이용함으로 법률적 효력이 확실함.
주소불명의 처리과정	회신거래처의 주소불명시 반송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재발송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이메일주소 불명시 반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함으로 재발송이 용이함.

#### 4. 전자채권채무조회서의 감사증거력

“회계감사준칙 505 외부조회”의 문단 33에 따르면 우편 조회뿐만이 아니라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다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자채권채무조회서의 감사증거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회신결과의 신뢰성

33. 감사인은 회수된 조회서가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지 고려한다. 감사인은 회신내용의 진실성을 고려한 후 의문이 존재하면 확인 절차를 실시한다. 감사인은 알려진 회신자와 전화통화 등 구두접촉을 통하여 회신 내용과 원천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동 회신자에게 조회서 원본을 감사인에게 직접 우송하도록 요청한다. 감사인은 정보기술

이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팩스나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태로 회신서를 수령한 경우 그 출처가 확실한지 고려한다. 감사인의 구두 조회는 감사조서에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그 사항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직접 제출해 주도록 거래처에 요청한다.

본 전자채권채무조회서는 감사증거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회신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회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와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회신회사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와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 4 조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005. 3. 31. 개정)

#### 전자서명법 제 3 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2001. 12. 31. 제목개정)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2001. 12. 31. 개정)
-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01. 12. 31. 신설)

따라서, 당사의 시스템을 통해 회수한 전자채권채무조회서는 기존의 우편조회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에 비해 감사증거력이 훨씬 월등합니다.

(전자채권채무조회서의 법률적 효력은 이미 유수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 5. 당사 시스템의 안정성

당사의 서버는 방화벽, 해킹방지 장치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킹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된 문서 자체는, 고도의 암호화과정을 거친 문서로서, 현재 발급되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암호화 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정보기관이 암호해독을 시도할 경우에도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실상 문서의 위변조는 불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전자서명된 문서의 암호해독에 소요되는 기간**

아래 표는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키가 1년 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키 길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키의 길이가 84.67 비트라면 정보기관이 2010년의 기술력으로 1년이 걸림. 현재,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키의 길이는 80 비트이며, 올 상반기에 108비트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암호알고리즘 안전성 최소 키 길이 (분석주체가 1년안에 해독할 수 있는 키 영역)>

연도	분석 주체		
	중견기관 (\$300K)	대규모 기관 (\$10M)	정보기관 (\$300M)
'10	68.67	78.67	<b>84.67</b>
'15	72	82	88
'20	75.33	84.34	91.33
'25	78.67	88.67	94.67
'30	82	92	98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탁과제 결과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등 안전성 기준연구, 2009.6, 고려대학교)

**6. 전자채권채무조회프로그램의 Demo 및 사용료 등**

[www.wan.co.kr](http://www.wan.co.kr) 로 접속하시면, 프로그램의 시연이 가능하며, 사용료의 경우, 현재, 피감사회사당 가입비 10,000원, 조회거래처당 1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